제7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계약기간)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계약 당사자는 이용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1부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1부
   3)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1부
   4)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인정 기간이 갱신 또는 변경 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5.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6.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계약 목적)

1. 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제10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서비스 제공일 과 시간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00:00- 24:00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을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할 수 있다.

2.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수건,욕조,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4.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5.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포함되며,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도록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 방문 요양의 1회당 이용 시간 별 급여 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 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에 관한 고시 해당자)	40%.60%

제11조 (그 밖의 이용부담액)

1.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 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진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당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 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⑥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⑦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⑧ 계약 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 사망,시설입소,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병원입원,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⑤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국민은행 058101-04-377803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고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자격 변동 되었을 경우나 수가 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변경일로 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계약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 변화,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때는 기관의 기관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 요청 하여야 하며,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3. 절차
   신규 및 갱신계약→ 계약자 상담→ 욕구사정,위험도평가→급여계획 및 통보→서비스일정등록→서비스실시

제3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5조 (서비스 내용)

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래표와 같은 서비스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구 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 도움,구강관리,식사 도움,몸단장,옷 갈아 입히기,머리 감기기,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인지관리지원	인지변화관리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일상 생활 함께하기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②방문 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16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임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100%로 부담한다.

가)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단, 동법 제 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본인부담금 40%.60%를 본인이 부담한다

나) 기초 생활 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0%)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제4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7조 (배상책임,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 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및 납부

① 기관은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이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보험사의 요양보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제외한다.

③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기관에서 가입한다.